

이천시의회에 출석 ·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(안)
(이광희의원 대표 발의)

| | |
|----------|--|
| 의안 번호 | |
|----------|--|

제출년월일 : 2003년 5월 12일
제 출 자 : 권영천 · 오성주 ·
김정호 · 이광희 · 이현호 · 정운한

제안이유

- 이천시의회에 출석 ·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중 소속기관공무원에 대한 범위를 표현한 문구중 일부 표현이 현행 조직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직제범위 및 직급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정정을 통해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일관성 있는 법규체계 정비로 보다 정확한 의정활동 구현을 도모코자 함.

주요골자

- 현행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의회에 출석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(시 본청의 국장, 실장 · 담당관 · 과 · 소장과 동일직급이상인 자)를 조직관계법령상의 규정에 맞게 (시 본청의 국장, 실장 · 담당관 · 과장급 공무원에 해당하는자)로 정정(안 제2조)

이천시조례 제 호

이천시의회에출석·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이천시의회에출석·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 본청의 국장, 실장·담당관·과장급 공무원에 해당하는자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|
| <p>제3조(범위) (생략)</p> <p>1. - 3.(생략)</p> <p>4. <u>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 본청의</u> 국장, 실장·담당관·과·소장과</p> | <p>제3조(범위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 3.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 본청의</u> 국장, 실장·담당관·과장급 공무</p> |
| <p><u>동일직</u></p> <p><u>급 이상인자</u></p> | <p><u>원에</u></p> <p><u>해당하는자</u></p> |